(서식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전세사기피해자)

※ 아래 빈칸을 채우시고 ☑ 해주세요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전광역시 구		공공주택	□여 □부
			가족소유	□여 □부
연 락 처	010-		복지대상	□여 □부
피해주택	대전광역시 구		피해자등 결정일	(결정문의 날짜)
경·공매 진행여부	□경·공매개시 □매각기일 결정(차) □경매종료 □기타()			
보증금 회수	□전액 회수 □일부 회수 □ 전액 미회수			

2. 지원사업 신청

구 분	사업별	세부내용			신청액 (센터 작성칸)
공 통	주거안정 지원금	피해주택 가구원	□1인 □2인 □3인이상		천원
		가구원관계	□전부가족(친족) □사실혼 □그외		
해당시 (한가지 선택)	공공주택 이사비	이사날짜	실제비용	신청내용	천원
		. . .	만원	□이사비 □사다리차 □기타	
	월세	신청회차	□ 1회차 □ 2회차		천원
		주택유형	임대인	신청기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다중) □오피스텔 □기타		~ (개월)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 . .~ . . .	천원	천원	
	해당없음	□주택구입 □원가구 편입 □타가구 편입 □타지역 전출 □전세 □셀프이사 □신청시기 미도래			
지급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3. 유사 지원금 수급사실 여부

대전청년월세	□여 □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여 □부
긴급복지(기초생활수급) 지원	□생계비 □주거비(월세 포함) □이사비 □해당없음		

- 뒷장을 계속 작성해 주세요-

(후면)

유의사항	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인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피해액의 전부를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거나 받은 경우, 4. 기타 환수가 필요한 경우	☐
신청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센터에 피해자 결정 철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기간에 대전시(자치구)에서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등을 받은 경우, 일부만 지급하거나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누락·미비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대상에서 지원보류 혹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거짓·허위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고,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원금 반납 계획(확약)서

피해자 (성명 기재할)가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을 포함함)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전시로 부터 지원받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피해주택이 경매종료된 경우에는 위 칸 작성 생략 가능

(서식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 이용 ·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집 • 이용 • 처리 목적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금 중복 수급 방지 및 지원금 지급절차 이행
수집 • 이용 • 처리 항목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임대차 현황, 첨부서류 (지원금 신청서상 첨부 서류)
보유 및 이용 기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종료시까지. 다만 지원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통계작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필요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의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피해 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 · 조회 목적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금 중복 수급 방지 및 지원금 지급절차 이행
제공 · 조회 항목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피해주택 현황, 첨부서류 (지원금 신청에 첨부한 첨부서류)
제공기관	대전광역시청, 구청, 법원, 공공기관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의 지원금 신청일부터 5년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식3)

위 임 장

1. 위임자(전세사기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대전광역시 구		
연 락 처	(010)		
위 임 사 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신청		

2. 대리인(위임받은 사람) ※ 대리인은 가족만 가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010)	위임자와의 관계	

※ 대리인 방문시 추가서류
·위임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첨부: 위임자 인감증명서

년 월 일

위 신청인(위임자) ㊞ (전화 : 010- -)

대전광역시장 귀중

(서식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반납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반납사유	ㅇ 보증금 전액 회수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기 지원받은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반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서식5)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4. 11. 1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지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최초 결정 내용	결정번호	
	결정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 법 제2조제4호나목 [] 법 제2조제4호다목	
	전세사기피해주택 소재지(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동·층·호까지 명확히 기재)	
요청사유		
결과회신	[]전자 송달	문자메시지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조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직접 신청·조회하는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우편 송달	(송달 주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조사·확인	→	심의·의결	→	피해자 결정 철회
신청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국토교통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